



교육감 규정

번호: A-832

제목: 학생 대 학생 차별, 괴롭힘, 위협 및/또는 집단 따돌림

항목: 학생

발행: 2021년 10월 7일

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은 2019년 10월 23일 자 규정 A-832을 대체합니다. 본 규정은 학생 대 학생 차별, 괴롭힘, 위협 및/또는 집단 따돌림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 조사 및 해결에 관한 절차를 수립합니다.

변경 사항

- 온라인 학습 중에도 학생 대 학생 차별,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은 금지된다는 내용 추가. (개요, 섹션 I.A)
- 이전의 첨부 번호 1을 대체하는 교육감 규정 A-832에 따른 금지된 행동의 정의에 관한 정의 섹션, 교육감 규정 A-830에 대한 참조 추가. (섹션 I.D)
- 괴롭힘 및 집단 따돌림의 정의에 대한 예를 추가. (섹션 I.E)
- 온라인 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예의 목록에 문자 및 앱을 추가. (섹션 I.F.1)
- 섹션 II.C에 명시된 신고를 하지 않은 직원에 관한 조항 추가. (섹션 II.D)
-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학생 대 학생 성별 기반 행동 의심 신고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추가. (섹션 II.E)
- "조사 파일" 항목 제거. (섹션 II.J)
-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혐의를 받는 당사자들의 부모(들)과 학교장/대리인이 대화 해야한다는 섹션 II.L의 내용에 정보 추가. (섹션 II.L)
- 교육감 규정 A-412에 참고 내용을 추가하고, "보로/시 학생 서비스 오피스 디렉터"를 "보로 안전 디렉터"로 대체. (섹션 II.M)
- 증인 진술서를 "받아내는" 것이 아닌 "준비하도록 부탁"하는 것으로 변경. (섹션 III.A.5)
- OORS 리포트의 사본은 성별 기반 행동에 관련 반드시 보로/뉴욕시 오피스, 학생 서비스 디렉터 및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 (섹션 III.E)
- 교내 또는 학교 밖의 의료 서비스 의뢰를 중재 또는 지원의 예로 추가하고 학교 사회 복지사, 가이던스 카운슬러, 심리상담사 또는 기타 적절한 교직원 의뢰가 "가이던스 중재"의 예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섹션 IV.B)
- 교직원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에 근거하여, 학생의 개별 교육

A-832 학생 대 학생 차별, 괴롭힘, 위협 및/또는 집단 따돌림

2021/10/07

프로그램(IEP) 또는 Section 504항 계획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성립된다는 점을 명시한 항목에 정보를 추가. (섹션 IV.C)

- 안전 및 청소년 발달 담당실(OSYD)에서 제작한 모든 사람 존중 포스터를 “눈에 띄게 게시” 한다는 의미는 “학생, 학부모 및 직원들이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한다는 의미임을 명확히 하며, 학교들은 가급적이면 학년도 초반에 이 포스터를 게시하게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 (섹션 V.A)
- 각 학교는 반드시 매년 OSYD에서 준비한 문서를 배포해야 하며, 이 문서에는 학부모들이 학교 밖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 추가. (섹션 V.B)
- 각 학교장/대리인은 되도록이면 학년도 초반에 RFA 담당관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 (섹션 V.C)
- 각 학교장의 통합 학교 및 청소년 발달 계획 연례 제출 의무를 갱신함. (섹션 VI)
- 비밀 유지에 관한 섹션 VII에 “지원 및 중재 제공을 포함”이라는 문구 추가.
- 섹션 VIII로 “대안 신고 절차”를 추가.
- 본 규정 전반에 걸쳐, 교육감 규정 조항이 언급될 때마다 해당 규정으로 가는 하이퍼링크 추가.



교육감 규정

번호: A-832

제목: 학생 대 학생 차별, 괴롭힘, 위협 및/또는 따돌림

항목: 학생

발행: 2021년 10월 7일

요약

뉴욕시 교육청에서는 학생간의 괴롭힘이나 위협, 따돌림이 없고, 인종, 피부색, 신념, 민족, 출신 국가, 시민권 유무/체류 신분, 종교,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지향, 장애 또는 체중 등을 이유로 학생이 다른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및 교육 환경을 유지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이나 괴롭힘, 위협 및/또는 집단 따돌림은 금지되며, 이런 행동이 교육 과정을 방해하거나 확실히 방해할 위험이 있거나, 학교 공동체의 보건, 건강, 도덕 또는 안녕에 해를 끼치거나 확실히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면 학교, 학교 수업시간, 온라인 학습시간, 학교 일과 전후, 학교 건물 내, 학교 후원 행사 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차량을 이용해 이동 중은 물론 학교 건물이 아닌 타 장소에서도 절대로 용인될 수 없습니다. 본 규정은 학생 대 학생 차별, 괴롭힘, 위협 및/또는 집단 따돌림에 관한 신고, 조사, 통지 및 추후 절차에 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동에 가담한 학생은 뉴욕시 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품행 기대치("규율 규정") 및 교육감 규정 A-443에 따라 적절한 중재와 지원, 그리고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 및 증인들은 적절한 중재 및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래 간 성폭력에 관한 불평 접수는 교육감 규정 A-831를 참고하십시오.

I. 정책

- A. 교육청은 학생 대 학생 차별, 괴롭힘, 위협 및/또는 집단 따돌림이 없는, 안전하고 지원적인 교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차별, 괴롭힘, 위협 및/또는 집단 따돌림은 학교, 교내, 학교 운영 시간, 온라인 학습 시간, 일과 전후, 학교 지원 이벤트 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교육 절차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거나 학교 커뮤니티의 건강, 안전, 도덕성 또는 안녕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추정될 때에는 학교 외 장소에서도 금지됩니다.

- B. 학생 대 학생 차별, 괴롭힘, 위협 및/또는 집단 따돌림에 관해 선의로 신고하거나, 혐의 조사에 협조한 학생이나 부모, 또는 교육청 직원에 대한 보복을 철저히 금지하는 것 역시 교육청 정책입니다. 보호된 활동 참여로 인해 개인에게 가해지는 모든 부정적 행위는 보복으로 간주됩니다. 보복 행위가 의심될 때에는 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며 적절한 징계에 처해질 것입니다.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학부모”란 용어는, 학생의 부모(들), 보호자(들), 학생과 부모 관계나 법적 보호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는 학생이 18 세 이상이거나 독립한 미성년자일 경우 학생 본인을 의미합니다.
- C. 학생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따돌리는 것은 본 규정 위반입니다.
- D.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을 실질적 또는 인지되는 인종, 피부색, 신념, 민족, 출신국가, 시민권/이민자 신분, 종교, 성별, 성적체성, 성표현, 성지향, 장애, 체중 등을 이유로 차별, 괴롭힘, 위협, 따돌림 하는 것은 본 규정 위반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금지된 행동에 대한 정의는 교육감 규정 A-830 참조(정의 섹션,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830>).
- E. 괴롭힘 및 집단 따돌림이란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행동이나 협박, 위협, 학대, 사이버따돌림 등을 포함한 적대적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 어떤 학생의 교육 수행도에 영향을 주거나 교육 프로그램(예, 학생이 수업에 꾸준히 출석하지 않음, 학생의 학업 수행도 또는 학급에서의 수행도에 변화가 있음) 또는 학교 후원 액티비티(예, 학생이 더 이상 과외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도에 변화)에 참여하거나 이로부터 혜택을 입을 능력 또는 기회에 부당하고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거나 이와 유사한 효과를 초래, 또는
 - 학생의 정신, 정서 또는 신체적 웰빙에 부당하고 실질적인 영향을 줌(예, 학교에서 학생의 행동이 영향을 받음, 학생이 위축되거나 스스로를 고립시킴, 학생이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집중력이 흩어진 모습을 보임), 또는
 - 학생이 본인의 신체적 안전을 두려워하게끔(예, 학생 본인 및/또는 타 학생들이나 교직원이 해당 학생의 안위에 대한 걱정을 표시한 적이

있음)상당한 원인제공을 하거나 원인제공을 하였다고 타당하게 의심할 수 있음, 또는

4. 학생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정서적 해를 입혔거나 충분히 입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

학생 대 학생 괴롭힘이나 집단으로 따돌리는 행위에는 실질적 또는 인지되는 인종, 피부색, 신념, 민족, 출신국가, 시민권/이민자 신분, 종교, 성별, 성적체성, 성표현, 성지향, 장애, 체중 등을 이유로 행하는 것이 모두 포함되나 반드시 이러한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F. 학생 대 학생 차별에 기반한 괴롭힘, 위협 및/또는 집단 따돌림은 다양한 형태를 띠 수 있으며 신체적, 비언어적, 언어적으로, 또는 글쓰기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고립된 사건 또는 일련의 연관된 사건일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진 커뮤니케이션에 쓴 차별, 괴롭힘, 협박 및/혹은 집단 따돌림에는 다음과 같은 테크놀로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핸드폰, 이메일, 개인 디지털 기기, 무선 기기, 소셜 미디어, 블로그, 문자, 앱, 채팅방 그리고 게임 시스템 등.
2. 학생 대 학생의 차별, 괴롭힘, 위협 및/또는 따돌림 행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나 반드시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신체적 폭력
- 스토킹
- 위협, 욕설, 놀림
- 폭력적이거나 과격한 제스처
- 굴욕을 느끼게 하거나 소외를 목적으로 또래 그룹에서 제외시키는 행동
- 경멸적인 언어 사용
-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을 실질적 또는 인지되는 인종, 피부색, 신념, 민족, 출신국가, 시민권/이민자 신분, 종교, 성별, 성적체성, 성표현, 성지향, 장애, 체중 등에 관한 언급을 포함하여 폄훼하는 농담을 하거나, 별명을 부르거나 모욕을 주는 것
- 타인을 모독하는 성격의 의견이나 선입견을 낙서, 사진, 그림, 동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인터넷에 올리거나 글로 쓰거나 인쇄하는 행위.
-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언어적 또는 신체적 위협;
- 흑독한 신고식
- 다른 학생의 실질적 또는 인지되는 인종, 피부색, 신념, 민족, 출신국가, 시민권/이민자 신분, 종교, 성별, 성적체성, 성표현, 성지향, 장애, 체중

등을 이유로 차별, 괴롭힘, 따돌림 또는 위협하는 성격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름을 일부러 잘못 발음하거나, 그러한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

II. 신고 절차

- A.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신고(report)"란, 피해자로 여겨지는 사람이나 타인(예, 교직원, 부모 및 기타 학생)이 학생 차별, 괴롭힘, 위협 및/또는 따돌림이 의심된다고 보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B. 각 학교 교장은 반드시 최소 일(1)인의 모두를 위한 존중("RFA 담당") 담당관을 임명하여 신고를 접수할 책임을 부여하고, 학생 및 교직원들이 관련 문제를 상의할 책임자로 정해야 합니다. RFA 담당관은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행정가, 슈퍼바이저, 교사, 가이던스 카운슬러, 학교 심리상담사나 소셜워커로서 해당 학교 풀타임 직원이어야 합니다.
1. 어느 경우에라도 각 학교에는 섹션 V.E-F 에 규정된 관련 연수를 받은 일(1)인의 RFA 담당관을 두어야 합니다. RFA 담당관이 사직할 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책임지고 새로운 RFA 담당관을 임명하고 그로부터 삼십 (30)일 이내에 관련 연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학교장은 즉시 임시 RFA 연락담당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2. 공인 RFA 연락담당관이 일시적으로 학교에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학교에 또 다른 RFA 담당관이 없을 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본래의 RFA 연락담당관이 복직할 때까지 임시 담당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 C. 학생 대 학생 차별, 괴롭힘, 위협 및/또는 따돌림을 목격하였거나, 관련 정보나 아는 바가 있거나, 어느 학생이 다른 학생으로부터 이와 같은 행위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교직원은 누구든 막론하고 즉시 해당 사안을 일(1) 수업일 이내에 RFA 담당관이나 학교장/대리인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구두 보고를 한지 이(2) 수업일 이내에 **불만 신고 양식** (제공 웹페이지: https://cdn-blob-prd.azureedge.net/prd-pws/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832-reporting-form.pdf?sfvrsn=43ca4491_6)에 사건 내용을 설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종이로 된 불만 신고 양식(https://cdn-blob-prd.azureedge.net/prd-pws/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832-reporting-form.pdf?sfvrsn=43ca4491_6 에 있음)이 언제든지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D. 상기 섹션 II.C 에 명시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직원은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며, 여기에는 해임, 의무 연수 및/또는 기타 후속 조치가 포함됩니다.
- E. 학생 대 학생 차별,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 의심을 신고하려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외의 개인은 [불만 신고 양식](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student-complaint-reporting-form) (제공 웹사이트: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student-complaint-reporting-form>) 제출을 포함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학교장/대리인, RFA 담당관 또는 기타 교직원에게 신고하고 성별 기반 행동 관련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전화, 이메일 또는 직접 아래 섹션 IX 에 수록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포털(제공 웹사이트: <https://www.nycenet.edu/bullyingreporting>)을 이용하여 알립니다.
- F. 다른 학생에 의해 차별, 괴롭힘, 위협 및/또는 따돌림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나 목격자, 또는 이러한 사건에 관해 알고 있는 학생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G. 학교에 신고하기가 꺼려지거나 걱정되는 학생이나 부모님은, 안전 및 청소년 발달 담당실("OSYD")에 이메일(RespectforAll@schools.nyc.gov)로 신고해도 됩니다. 이것이 적절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학생/학부모가 생각하기에 보고하고자 하는 행위가 본 규정에 적용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학생/학부모가 이전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적이 있으나 이런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또는 보고 자체가 꺼려지는 학생/학부모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OSYD 에서 본 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한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 H. 학생, 학부모 교직원 외 개인 누구든 익명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고는 익명의 신고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가능한 모든 조사가 실시되고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 I. RFA 담당관은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학교장/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J. 학교장/대리인은 모든 문서상의 신고서(예, 이메일, 불만/신고 양식을 통해 제시된 신고)를 반드시 학교 조사 파일에 보관해야 합니다.
- K. 학교장/대리인은 모든 신고 내용을 접수한 지 일(1) 수업일 이내에 교육청 온라인 사건 신고 시스템(OORS)에 입력하고 즉시 섹션 III 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 L. 학교장/대리인은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의심 피해자 및 가해자의 부모(들)에게 접수된 관련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사건이 조사될 것이라는 사실과 제공 가능한 지원과 중재에 관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본 규정 사본 및 관련 자료(제공 웹페이지: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policies-for-all/respect-for-all/respect-for-all-handouts>)를 학부모에게 전자형식 또는 학부모가 온라인 접근이 불가능할 경우 종이 사본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지 의무는 신고접수 즉시 이행되어야 하고, 학교장/대리인이 신고를 접수한지 이(2) 수업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학생이 부모에게 통보하는 것과 관련한 안전 문제를 학교장/대리인에게 표명하는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사생활 및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학부모(들)에게 통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대리인은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시니어 현장 법률자문 및 성별 기반 행동에 대해서 타이틀 IX 코디네이터 또는 타이틀 IX 담당관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 M. 학교장/대리인이 신고 내용이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믿는다면, 반드시 경찰에 연락해야 합니다. (교육감 규정 A-412 참고: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412-security-in-the-schools-english>). 학교장/대리인은 시니어 현장 법률자문 및/또는 보로 안전 디렉터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N. 혐의 내용(들)의 성격과 심각도에 따라 관련 내용에 관한 조사가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면,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OSYD 에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III. 조사

- A. 모든 신고 내용은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모든 관련자 및 증인들은 반드시 별도로 면담해야 하며, 모든 면담 기록을 작성, 보관해야 하며 각 면담의 날짜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학교장/대리인의 다음과 같은 조사 단계 착수는 가능한 빠를 수록 좋으며, 신고가 접수된 지 오(5) 수업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1. 의심 피해자 면담
 2. 의심 피해자에게 자세한 피해 내용의 설명을 포함한 가능한 상세한 내용, 사건 발생 시간 및 장소, 목격자 목록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요청
 3. 의심 가해 학생을 면담하고 신고된 바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입증되었다면 반드시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조언

4. 고발당한 학생에게 사건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요청
 5. 목격자가 있다면 면담하고 서면 진술서를 준비하도록 요청
 6. 관련 증거 입수(예, 감시 카메라 또는 오디오 녹음). 학교장/대리인은 부적절한 온라인 콘텐츠를 다루어야 할 교육청 지침에 따르고, 필요하다면 보로 안전 디렉터 및 시니어 현장 자문에게 의견을 구합니다.
- B. 조사 말미에,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 혐의 내용이 우세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예, 관련자 및 증인들의 신뢰도와 이들이 제시한 증거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혐의 내용이 실제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됨).
- C. 혐의 내용이 입증되었을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이 행위가 본 규정 위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릴 때,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위반 행위를 둘러싼 총체적인 상황을 평가해야 합니다. 학교장/대리인은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나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사건 당사자 학생들의 나이
 - 행위의 성격, 심각성 및 범위
 - 행위의 빈도 및 지속 기간
 - 행위에 가담한 학생들의 수
 -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 행위가 발생한 장소
 - 동일한 학생들이 포함된 기타 사건이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적이 있었는지의 여부
 - 행위가 피해자의 교육(출석, 학업 수행도 또는 특별활동 참가)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 행위가 피해자의 교내 행동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 피해자의 안전에 관한 우려가 대두되었는지 여부
 - 피해자의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웰빙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
- D. 조사 종결 시점에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정보를 OORS 에 입력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알아낸 점, 혐의 내용이 사실로 입증되었는지 여부, 이러한 행위가 본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러한 정보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지 않은 한, 반드시 신고를 접수한지 십(10) 수업일 이내에 OORS 에 입력되어야 합니다.

- E.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혐의 내용의 피해자 부모(들) 및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부모(들)에게 서면으로 혐의 내용 입증 여부 및 해당 행위가 본 규정 위반인지 판단한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혐의 내용 중 하나라도 입증된 경우, 이러한 통지문에는 반드시 학부모가 학교에 연락하여 해당 사건 및 후속 조치에 관해 논의하고, 자녀에게 중재나 지원이 지원될 수 있는지 의논하도록 해야 한다.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지 않은 한, 학부모들은 신고 접수 십(10)일 이내에 이러한 통지문을 받아야 합니다. 섹션 II.K 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의심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고지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 이러한 부모들에게는 본문단에 명시된 정보도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 OORS 리포트의 사본은 성별 기반 행동에 관련 반드시 보로/뉴욕시 오피스, 학생 서비스 디렉터 및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 F. 섹션 III.E 에 명시된 정보는 학생 기록 정보의 기밀유지에 관한 주 및 연방법에 의거하여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의심 피해 학생의 부모들에게는 피해자와 관련된 후속 조치, 중재 및 지원에 관한 정보만 통지될 수도 있고,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는 가해자와 관련된 후속 조치, 중재 및 지원에 관한 정보만 통지될 수 있습니다.
- G. 조사 전이나 조사 중의 어느 때라도 학교장/대리인이 학생(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 포함)들의 안전과 웰빙을 보장하기 위해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중재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학생의 학부모에게 반드시 이 사실을 알리고, 섹션 IV 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적절한 중재 및 지원이 문서에 기록되고, 시행되고 모니터되며, 적절한 경우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IV. 후속 조치

- A. 학교장/지명자는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B. 조사가 종결되고 최종판단이 내려지면, 섹션 III 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해자 및 가해 학생, 증인을 대상으로 적절한 경우 중재 및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중재 및 지원은 각 케이스 별로 판단하여 실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모니터 되고 필요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중재와 지원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 교내 또는 학교 밖의 의료 서비스 의뢰;

- 가이던스 중재(예, 학교 사회복지사, 가이던스 카운슬러, 심리상담사 또는 기타 적절한 교직원에게 의뢰)나 지역사회기관에 상담이나 지원 및/또는 교육이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해 의뢰
- 학업 지원 및 조정(예, 수업, 런치/쉬는 시간, 방과 후 프로그램 스케줄 변경)
- 개별 지원 계획 작성(한 학년도 동안 두(2) 차례 이상 입증된 성폭력 피해자가 된 학생 및/또는 한 학년도 동안 본 규정을 두(2) 차례 이상 위반한 학생을 대상으로 반드시 개별 지원 계획을 작성하여 실행)

지원 및 중재에 관한 추가 정보는 훈육규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재나 분쟁 해결은 어떤 상황에서도 따돌림 및 위협에 대한 적절한 중재가 될 수 없습니다. (전학이 적절한 조치일 경우, 전학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은 교육감 규정 A-101(<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101---korean>) 및 A-449(<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449-3-9-2011-korean>) 참조.)

C.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학생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이나 섹션 504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교직원이 생각할 경우, 교육감 규정 A-710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710>) 및 특수교육 표준 운영 절차(SOPM, https://infohub.nyced.or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specialeducationstandardoperatingproceduresmanualmarch.pdf?sfvrsn=4cdb05a0_2)에 나온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D. 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학생은 규율 규정 및 교육감 규정 A-443 에 명시된 절차 및 요건에 따라 적절한 훈육조치에 취해야 합니다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443-3-5-04-english>).

E.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모든 관련자 및 증인들에게 시행된 중재 및 지원과 위반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학생(들)에게 내려진 모든 처벌 내용을 OORS 를 이용하여 정학 및 공청회 담당실 온라인 시스템("SOHO")에 입력해야 합니다.

V. 예방, 통지 및 연수

A. 각 학교는 반드시 눈에 띄게(학생, 학부모 및 직원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장소들에) "모든 사람 존중"에 관한 포스터(제공 웹페이지: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policies-for-all/respect-for-all/respect-for-all-handouts>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해당 포스터에는 반드시 RFA 담당관(들)의 성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교들은 가능한 학년도 초 이른 시기에 이 정보를 게시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B. 각 학교는 반드시 매년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규정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OSYD 에서 제작한 자료를 배포해야 하며, 여기에는 신고 방법 및 추가 지원이 필요할 때 학부모가 학교 밖에서 연락할 수 있는 곳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제공 웹사이트: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policies-for-all/respect-for-all/respect-for-all-handouts>). 학교들은 반드시 이러한 정보가 학년도 중 등록하는 학부모/학생들에게도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 C. 각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RFA 담당관(들)의 성명과 연락처 정보가 학교 웹사이트에 나와 있으며,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가 이것을 알고 있는지 최소 연 1 회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에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나 가정 통신문 등이 있으나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학교들은 가능한 학년도 초 이른 시기에 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D. 각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매 학년도 10 월 31 일 이전 본 규정에 명시된 정책 및 절차 관련 OSYD 에서 개발한 정보와 연수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E. 각 학교장은 반드시 모든 교직원(교사 외의 직원들도 포함)들에게 매 학년도 10 월 31 일 이전에 본 규정에 명시된 정책 및 절차 관련 OSYD 에서 개발한 정보와 연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다뤄져야 합니다:
1. 학생의 실질적 또는 인지되는 인종, 피부색, 신념, 민족, 출신국가, 시민권/이민자 신분, 종교, 성별, 성적체성, 성표현, 성지향, 장애, 체중 등을 이유로 자행되는 차별, 괴롭힘, 위협, 따돌림으로 분류될 수 있는 다양한 행위에 관한 인식과 민감성 고취.
 2. 차별, 괴롭힘, 위협 및 따돌림 행위의 식별과 완화.
 3. 차별, 괴롭힘, 위협 및 따돌림 행위의 사회적 패턴.
 4. 차별, 괴롭힘, 위협 및 따돌림 행위의 예방 및 대응.
 5. 차별, 괴롭힘, 위협 및 따돌림 행위의 결과에 대한 이해 및 교육환경 속에서의 따돌림, 편견, 공격적 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전략.

6. 위의 개념들을 학급 활동에 포함시키는 등의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

- F. 각 학교장은 섹션 V.E에 명시된 학교 차원의 연수 외에도, 학교별로 최소 한(1) 명의 RFA 담당관이 OSYD 에서 실시하는 RFA 의무 연수에 참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1) 인종, 피부색, 신념, 민족, 출신국가, 시민권/이민자 신분, 종교, 성별, 성적체성, 성표현, 성지향, 장애 및 체중 등의 문제에 있어 인간관계 및 2) 위의 섹션 V.E 에서 설명한 문제들.
- G. 본 규정 사본은 학부모, 교직원 및 학생의 요청이 있을 때 배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VI. 통합 학교 및 청소년 개발 계획

각 학교장은 반드시 매 학년도 10 월 31 일 까지 연례 통합 학교 및 청소년 개발 계획에 다음과 같은 정보, 그리고 교육청에서 명시한 기타 추가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A. RFA 담당관(들)의 성명. 이 정보는 필요에 따라 갱신하십시오.
- B. 최소 한(1)명의 RFA 담당관이 상기 섹션 V.F.에 명시된 연수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증명.
- C. 본 규정 섹션 V.D에 명시된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정보와 연수를 학생들에게 제공했다는 증명.
- D. 비교직 직원들을 포함한 전 교직원이 상기 섹션 V.E.에 명시된 정보와 연수를 받았다는 증명.
- E. 섹션 V.E에 필수로 규정된 연례 교직원 연수의 의제, 참석자 서명 명단 및 모든 연수 관련 문서의 사본을 학교 파일에 보관해야 합니다.
- F. 편견, 괴롭힘, 위협 및/또는 따돌림에 대한 예방 및 대처 계획.

VII. 비밀 보호

모든 관련자 및 신고 관련 모든 증인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이 교육청 정책입니다. 그러나 비밀보장의 필요성은 반드시 경찰 조사에 협조할 의무, 공정절차 제공 및/또는 조사와 신고 내용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치(지원과 중재 제공 포함)를 취하는 것과 형평성이 맞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와 관련된 정보는 적절한 상황 또는 법으로 규정한 바, 또는 학생의 안전이나 웰빙이 위협받는 상황 하에서는 노출될 수 있습니다.

VIII. 대안 신고 절차

이러한 내부 절차는, 다음과 같은 외부 기관에 혐의 제기 등의 기타 해결 방안을 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민권담당실(Office for Civil Rights)

뉴욕사무소(New York Office)

32 Old Slip, 26th Floor

New York, NY 10005-2500

전화: (646) 428-3800

팩스: (646) 428-3843

이메일: OCR.NewYork@ed.gov

<http://www.ed.gov/ocr>

IX. 문의처

본 규정 관련 문의:

Office of School and Youth Development

뉴욕시 교육청

52 Chambers Street – Room 218

New York, NY 10007

전화: (212) 374-6807

팩스: (212) 374-5751

이메일: RespectForAll@schools.nyc.gov

Title IX Coordinator

65 Court Street, Room 200

Brooklyn, NY 11201

이메일: Title_IX_Inquiries@schools.nyc.gov

전화: 718-935-4987